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 농지은행 위탁임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위탁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 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위
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
으나 개정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
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
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농지은행처	책임자	부 장	방규현 (061-338-5881)
	농지사업부	담당자	대 리	최운석 (061-338-5888)

붙임

농지법 개정사항 안내 포스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참여가능 농지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자

2023년 8월 16일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기존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정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